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7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7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및 자격증 재교부등에 관한 사항이 위임(보건복지부령제13호) 되었으며,
-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과 유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의 균형유지, 시험집행에 따른 소요경비등 제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를 충청북도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당초 2,000원에서 5,000원으로 변경하며,
-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당초와 변경 없이 500원으로 조례에 신설함

3. 근거법령

-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

- 붙임 : 1.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2. 신구조문 대비표
3. 기타 참고자료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(단위: 원)

| 구 | 분 | 기 | 준 | 요 | 액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|---|
| 아. 자격시험 관련 | | | | | |
| | (1)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 교부 신청 | 1 | 건 | 5,000 | |
| | (2)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| 1 | 건 | 500 |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